



KOLAS-G-012 : 2024

---

# ENERGY STAR<sup>®</sup> Program

##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EPA ENERGY STAR 프로그램에 대해 EPA가 지정(Recognition)하는 시험기관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 적용된다.

**제2조(시험기관 승인)** ① KOLAS는 EPA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시험기관 인정(Accreditation)을 위해 EPA가 승인한 인정기구로서 EPA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시험기관에 대해 EPA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KOLAS로부터, 관련된 에너지스타 제품기준의 시험방법에 대해 KS Q ISO/IEC 17025에 따라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후, 미국 환경청에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험기관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미국 환경청과의 정보교환)** 인정기구의 장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승인된 KOLAS 공인시험기관이 인정범위의 변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인정취소, 인정정지, 인정범위 축소 등)에는 KOLAS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미국 환경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인정절차)** ① EPA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시험기관으로 EPA로부터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인정신청시 EPA ENERGY STAR 프로그램을 명확히 식별하여 KOLAS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시험기관은 별표 1의 ENERGY STAR 프로그램 시험기관 요구사항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

며, KOLAS가 공식적으로 인정공고를 실시하기 전이거나 KOLAS가 인정하지 않은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EPA에 ENERGY STAR 프로그램 시험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ENERGY STAR<sup>®</sup>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1호, 2021.4.8.)의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요령에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NERGY STAR 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별표 1]

## ENERGY STAR 프로그램 시험기관 요구사항

### 1. 일반요건

가.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 KOLAS의 인정을 유지한다. KS Q ISO/IEC 17025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된다.

- 1) 품질목표, 책임, 운영절차를 명시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2)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숙한 인력을 고용한다.
- 3) 적절한 시험에 필요한 시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다.
- 4) 측정장비는 정확하고 교정되어야 하며, 교정 기록이 유지될 것을 보장한다.
- 5) 모든 최초 관찰, 시험 데이터 및 계산 기록을 유지한다.
- 6) KS Q ISO/IEC 17025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내부 또는 외부의 상업적 요소, 재정 또는 기타 압력 및 영향에 대한 시험기관 경영진 및 인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한다.

비고 : EPA는 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KS Q ISO/IEC 17025의 공정성 요구사항에 대한 입증방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가) 시험기관의 결과를 관리, 수행 또는 검증하는 모든 인원의 책임, 권한 및 상관관계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직도
  - 나) 내부심사 일자, 심사 발견사항 및 시정조치
  - 다) 고객 불만 및 시정조치
  - 라) 참여한 직원의 신원을 포함하여 반복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포함된 시험 기록
  - 마) 시험기관 인원이 윤리 및 규정 준수 감사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통과한다는 증거
  - 바)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보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는 증거
- 나. 인정받은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시험방법에 대해 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

하는 별도의 시험기관 자체 절차를 개발 및 유지한다.

다. 시험결과를 은폐하거나 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EPA/DOE에 즉시 통보한다.

라. 시험기관이 제품을 시험할 예정인 ENERGY STAR 프로그램에 명시된 시험방법에 대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범위에 대해 기록한다.

비고 : ENERGY STAR 규격(specification)이 개정될 경우, EPA는 시험기관 및 인정기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정범위의 갱신을 시험기관에 요구하지 않는다. 단, EPA는 시험기관의 자체 절차를 현재 유효한 규격의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기술되는 시험방법과 부합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시험방법의 주요한 변경, 예를 들어, 규격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 규격과 상이한 시험방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요구되는 시험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인정 범위의 갱신이 필요하다.

마. EPA 또는 EPA가 지명한 대리인이 ENERGY STAR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자격 또는 자격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시험에 입회하도록 허용한다. EPA 또는 EPA가 지명한 대리인은 전적으로 입회인으로만 활동하며, 어떤 경우에도 시험기관의 시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바.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시험기관은 ENERGY STAR 프로그램의 인증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성적서에 대해서는 인정범위 내에서 비공인성적서의 발행이 불가하다.

## 2. 시험기관간 비교 시험

가. EPA/DOE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적절한 숙련도시험(ILC)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시험/교정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숙련도시험을 수행한다.

다. EPA/DOE의 요청 시 다음을 제출한다.

1) 숙련도시험의 결과

- 2) 해당 결과의 분석
- 3) 의심 또는 불만족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시정조치

### 3. 보고사항

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인정서 및 인정범위의 파일 사본을 EPA에 제출한다.

- 1) 인정 발효일
- 2) 인정 만료일(해당되는 경우)
- 3) ENERGY STAR 관련 시험 방법

나. KOLAS가 ENERGY STAR 관련 시험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 및 조치내용을 포함한 평가문서 사본을 EPA와 공유하도록 허가한다.

다. 다음과 같이 시험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30일 안에 KOLAS 뿐만 아니라 EPA에 보고한다.

- 1) 기관명,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 3) 소재지 변경 또는 주요 설비 이동
- 4)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 5) 대표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의 변경
- 6) 인정분야 및 범위 변경
- 7) 기타 인정기준에 대한 공인기관의 능력 충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라. ENERGY STAR 시험 방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PA에 이를 전달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에 관한 EPA의 결정을 준수한다.